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92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05. 29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장학생 추천자에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을 추가하여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새마을장학생 추천자로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 추가
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5. 4. 30. ~ 2025. 5. 20.(20일 이상)
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)과”를 “한다),”로, “한다)”를 “한다)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(이하 “구직장·공장협의회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”을 “구협의회장, 구부녀회장, 구직장·공장협의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추천) ①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(이하 “구지회장”이라 한다)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.</p> <p>② <u>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의</u>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.</p>	<p>제4조(추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), ----- ----- 한다), <u>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(이하 “구직장·공장협의회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구협의회장, 구부녀회장, 구직장·공장협의회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자치행정과 주민참여팀 이병인
연 락 처	2627 - 2206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
[시행 2024. 7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06호, 2024. 7. 1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1.2.8., 2020.3.25., 2024.7.18.>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특기생장학금,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01.2.8., 2024.7.18.>

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

- ①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·녀 새마을지도자(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, 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.<개정 1999.7.5., 2020.3.25., 2024.7.18.>
1. 유공자 장학생: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지도자의 자녀. 다만,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.
 2. 삭제<1999.07.05>
 3. 특기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하는 기능·체육·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 4. 성적우수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“C”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. 다만,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.
-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(이하 “타 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. 다만,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.<개정 2020.3.25., 2024.7.18.>

제4조(추천)

- ①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(이하 “구지회장”이라 한다)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.<개정 2020.3.25., 2024.7.18.>
- ②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.<신설 2024.7.18.>

제5조(선정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1999.7.5., 2020.3.25., 2024.7.18.>
1. 「상훈법」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2.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3.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4. 그 밖의 유공지도자

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(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)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7.18.>

제6조(장학생 선정 인원)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.
[전문개정 2024.7.18.]

제7조(장학금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3.25.>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<개정 2020.3.25.>

제9조(지급 및 정지)

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7.5., 2001.2.8., 2020.3.25., 2024.7.18.>

1.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
2. 삭제<1999.7.5.>
3. 장학생이 특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
4.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
5. 삭제<2001.2.8.>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7.18.>

제10조 삭제<1999.7.5.>

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,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1997.5.10., 2024.7.18.>

제12조 삭제<2024.7.18.>

관계 법령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(약칭: 새마을조직법)

[시행 2019. 12. 10.] [법률 제16766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